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1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주민복지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가. 신청기준 변경(안 제3조)

- 지원기준일 ⇒ 신청기준일
-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⇒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

#### 나.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상향 조정(안 제8조)

- 보훈영예수당 월 15만원 ⇒ 월 20만원
- 사망위로금 15만원 ⇒ 30만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개정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현지금액 개정 시기는 2018. 1. 19일 보훈영예수당을 월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 실시 한 바가 있으며, 참고로, 개정조례안의 상향조정 된 금액은 강원도 내 14개 시군의 입법례에서 볼 때 삼척시, 화천군과 함께 제일 높은 금액에 해당됩니다.
  - ※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강원도 내 14개 시·군 입법례 『붙임 1』
-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『붙임 1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강원도 내 14개 시·군 입법례

|             | 보훈영예수당(매월) | 사망위로금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평창군(개정 조례안) | 15→20만원    | 15→30만원 |
| 강릉시         | 10         | 20      |
| 동해시         | 10         | 30      |
| 삼척시         | 20         | 30      |
| 속초시         | 10         | 20      |
| 영월군         | 15         | 20      |
| 원주시         | 10         | 20      |
| 춘천시         | 10         | 20      |
| 횡성군         | 10         | 20      |
| 고성군         | 15         | 20      |
| 양양군         | 10         | 20      |
| 인제군         | 15         | 20      |
| 정선군         | 15         | 30      |
| 철원군         | 20         | 20      |
| 화천군         | 20         | 30      |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
안 1부.

##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지원기준일”을 “신청기준일”로, “주민등록상 주소를 둔”을 “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만원의”를 “20만원의”로, “15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<u>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월 15만원의 보훈영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하고, 해당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| 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<br/>----- <u>신청기준일</u> -----<br/><u>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</u><br/>-----.</p>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-----<br/>----- <u>20만</u><br/><u>원의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30만원을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